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을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본 사례]

1. 사안

피고는 D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주식부자로 행세하며,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자로서,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G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천을 믿고 2015. 4.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G로부터 H 500주(주당 평균 약 15만 원), I 10주(주당 320만 원), K 3주(주당 125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총 1억 1,095만 원을 지급하였음(이하 위 주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 1억 1,09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9도139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주식매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청구인용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인 주식매수대금 1억 1,095만원 전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이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액(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나.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실시하고,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무렵 약 1년 이상 동안 피고의 추천 종목 중 총 19개 회사의 장외주식(4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3건의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에 한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도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라거나 그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3. 본 판결의 의의

- 대상판결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i)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우와 (ii)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된 경우를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 손해액을 ‘주식 매수대금과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그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어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개별 사안에서 (i)과 (ii)를 정치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가 매수’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차액설을 적용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련구성원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김주현

변호사

02-316-4626

jhykim@shinkim.com

라응진

변호사

02-316-4758

wjra@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